

감사인 강제교체 기업과 조세회피 -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

임유니* · 김종일**

<요 약>

본 연구는 감사인 강제교체기업의 조세회피 정도를 분석해내는 것이 목적이다.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결론도 모두 동일한 결론을 맺고 있지는 않기에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의구심에서 출발한다. 감사인이 법률에 의거하여 강제적으로 교체되는 경우에도 감사인이 피감기업의 조세회피 활동에 조력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로 인하여 일정 정도의 독립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조세회피 행위가 감소할 것인가? 그리고,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경우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면 조세회피 정도는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 상기와 같은 이유로 피감기업의 조세회피 정도가 낮아질 것인가?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도입되었던 시기에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기업의 조세회피 정도를 측정한 결과 강제교체된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피감기업의 조세회피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감사인이 강제적으로 교체되는 경우 강제교체된 감사인이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게 되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 조절효과도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McGuire et al.(2012)에서 제시한 바와 유사하다. McGuire et al.(2012)에서는 세무전문 감사인이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조세회피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유추해보면, 배성호 외(201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강제로 교체된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통하여 지득한 피감기업에 대한 정보를 피감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8년 11월 1일에 개정된 외감법 시행규칙의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과도 맞물려 있어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도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감사, 감사인 강제교체제도, 조세회피,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uniqu22@catholic.ac.kr, 주저자

**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회계학전공 부교수, jayk@catholic.ac.kr, 교신저자

I. 서 론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 강제교체 기업과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특히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기업의 조세회피 정도를 연구하며, 감사인 강제교체와 동시에 동일 회계법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세무조정)가 제공되었을 경우 피감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도입 배경은 외부감사인의 비자발적 교체를 통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감사품질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경우 감사인 강제교체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낮아지리라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로 인하여 변경된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가 조세회피와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해보고자 한다.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로 인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으나, 변경된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감기업의 정보를 세무조정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년을 주기로 하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도입 및 시행되었다. 2003년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내용에 의하면,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을 예로 들며 국가 차원에서 제도도입을 통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왔던 기업들은 해당 시기 외감법에 의거 감사업무 수임기간이 6년을 상회하게 될 경우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하여야 했다. 그렇지만 당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09년에 폐지가 결정되었다(박연희 외, 2015).

그런데 그 후로부터 대략 10년 후인 2017년에 국회는 기업이 동일 회계법인으로부터 6년 연속 감사를 받은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법률안 개정 에 합의하였다.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2019년 1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시행된다. 상기 법안에 의거, 모든 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법인은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은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리하여 실제로는 2020년 11월에 최초 지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는 6년 연속 감사를 받은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는 감사인은 지정 이후 3년간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로 불리는 회계개혁안에 의해서 금융당국이 감사인이 교체되는 기업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1900여 곳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에 해당되며, 이는 상장사 87%가 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비록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과거에 폐지된 제도이나 이 제도가 갖는 학술적 의미를 살펴보는 본 연구는 작금의 제도 개혁과 맞물려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는 도입 이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폐지되었지만, 정부에서 다시금 유사한 제도를 법률로써 제

정하여 감사인 교체를 강제하려는 데에는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통하여 감사품질을 고취시키고 높아진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려 하기 때문이다. 과거 2003년 당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도입 취지는 회계투명성 강화였지만 그 현실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본 연구도 이러한 학문적 의구심을 기반으로 하여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로 인하여 감사인이 교체된 기업의 조세회피와의 연관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서술한 바대로 새로이 도입되는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의 역할로써 과거 시행되었던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로 인하여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기업의 조세회피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로 감사인이 교체된 기업은 조세회피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는 실증분석 결과, 감사인 강제교체 기업과 조세회피 정도와는 부(-)의 관계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기업의 감사인이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조세회피 정도가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감사인의 지식전이(knowledge-spillover)를 이유로 들 수 있다. McGuire et al.(201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감사인은 재무적 감사업무와 세무분야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피감기업의 재무분야 감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세무업무에도 활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감사인의 지식전이 현상으로 인하여, 조세 부담액에 민감한 기업들은 내부적으로도 조세전문가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수준을 줄이려 하지만, 더불어 외부감사인에게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더더욱 조세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Desai and Dharmapala(2006)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세회피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감사인 강제교체기업의 조세회피 정도를 파악하며, 조세회피 수준을 5분위로 나누어서 상위 조세회피 수준만을 본 분석에 활용한다. 또한, 강제교체된 감사인이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의 조세회피 수준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과거 시행되었던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를 통해서 신규 도입되는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예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와 조세회피 및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연구모형과 측정변수에 관하여 설명하고,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가 갖는 공헌점과 한계점에 대하여 서술한다.

II. 선행연구 검토와 가설설정

1.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 제도가 도입 취지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있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는 선행연구들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제도도입 성과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DeAngelo(1981)에 의하면 감사품질은 오류를 발견하는 적격성과 발견한 오류를 보고하는 독립성의 결합으로써,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국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시도했던 제도이다. 그러나 감사인이 동일한 기업을 계속적으로 감사할 경우 지식전이 효과(knowledge-spillover)로 인하여 감사품질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선행연구가 존재한다(최아름 외, 2014).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에 대해서 정리한 최아름 외(2014)의 연구에 의하면 강제교체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감사인에 대한 강제교체제도가 계속감사기간의 증가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를 반대하는 측은 이 제도로 인하여 계속감사기간이 줄어들면 피감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전문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먼저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주장에는 노준화(2009)의 연구가 있다. 노준화(2009)에 따르면 재량적발생액 모형을 이용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기업의 감사품질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재량적발생액은 감사인 강제교체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피감기업과 감사인간의 친소관계가 해소되리라는 제도도입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박재환 외(2008)에서도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와 초도감사 보수 할인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사인 강제교체기업의 감사보수가 자율교체 기업에 비하여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사인 강제교체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감사보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김선미 외(2011)에 의하면, 초도감사 수행 시 피감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감사실패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사실패의 위험은 감사인 자율교체 뿐만 아니라 감사인 강제교체의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언급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감사인 강제교체 기업이 감사인 유지기업의 보수주의 수준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일관된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강제로 교체될 예정인 감사인은 계속감사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감리지적과 명성의 훼손 등과 같은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교체 직전연도에 보다 높은 수준의 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가질 것도 또한 예상할 수 있다. 정도진 외(2017)에 의하면 감사인이 강제교체 되는 경우에 교체 직전의 감사품질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감사인이 강제교체 된 이후의 사후적 감사품질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사전적으로 감사품질이 제고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즉, 필자들에 의하면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지지하는 실증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김선미 외(201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감사인 강제교체와 성과대응 채량적발생액은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감사인 자율교체 기업과 감사인 강제교체 기업을 비교하였을 경우, 감사인 강제교체 기업의 성과대응 채량적발생액과 변동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유의성을 실증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인 김은(2011)은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Difference, 이하 BTD)를 측정한 결과 조세회피와 음(-)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밝혀냈다. 그렇지만, 표본이 감사인 강제교체 전체 시기가 아니고 또한 BTD 측정 방법도 본 연구와는 다르다. 비록 김은(2011)의 분석기간은 전체 감사인 강제교체 기간이 아닌 2006년에서 2007년으로 한정되지만, 상기 선행연구를 통해서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가 시행되었던 전체기간에 대해서 감사인 강제교체 기업의 조세회피 방향이 실제로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하게 된다.

2. 조세회피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전통적인 경우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을 줄이면, 기업 내에 유보되는 현금의 크기가 증가하고 이로써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배당금의 규모도 증가한다. 이균봉 외(2015)에 의하면, 이러한 사적편익 추구행위(rent division)는 주주에게 귀속되는 배당액의 크기 증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조세비용을 능가하여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강정연 외(2014)에 의하면 대리인이론 관점에서의 조세회피는 조세회피 행위로 발생한 여유자원을 외부 이해관계자가 통제 및 감시하기 어렵기에 경영자와 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정보불균형으로 인해 경영자가 자신의 편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써 적극적 조세전략을 수립하여 조세를 회피하기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조세회피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거래의 투명성은 감소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적발가능성을 낮추고자 보다 교묘하고 복잡한 회계거래를 반복하여 비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조세회피 기업의 기업가치는 비조세비용(재무보고 비용, 대리인 비용, 정치적 비용, 명예훼손 등)의 크기에 따라 음(-)의 연관성을 보인다고 한다. 즉 이는 기업이 조세회피를 할수록 기업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이다.

고종권 외(2013)에 의하면, Scholes and Wolfson 이후 약 20여 년간 조세연구의 근간은 세금이 경영자와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기업을 경영하면서 부담하여야 하는 필수 비용으로써 세금에 대한 고려는 비록 매출액과 같은 가시적 성과처럼 일차적인 고려요소는 아니더라도 후순위에는 반드시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대다수의 기업들은 경영자의 경영 성과를 언론에 보도하는데 있어 매출액,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활용하고, 기업들은 조세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무계획전략을 수립하여서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Dyrenge et al.(2008)은 조세회피를 세금의 감소행위라고 정의하였다. Dyrenge et al.(2008)에 의하면 조세회피와 절세전략을 구분짓기는 어렵지만, 기업들 대부분은 세금추징이나 가산세 부과 등의 위험이 없는 절세전략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명목 세금이 감소하는 차이를 대부분 조세회피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조세회피는 정부에게 귀속되어야 할 기업의 자원을 주주에게 이전하여 배당금이 늘어나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렇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현대적 기업에서의 조세회피는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위는 의도적인 개입을 의미하고, 적발의 위험에 대비해 회계거래가 복잡하고 정교해진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의 결과로써 정부에게 귀속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유보된 현금은 전통적 입장과는 달리 기업가치와 음(-)의 연관성을 맺고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고종권 외, 2013 ; 강정연 외, 2014 ; 강정연 외, 2012).

또한, Desai and Dharmapala(2006)에 의하면 조세회피와 경영자의 자금유용과도 일관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Desai et al.(2006)에 의하면 조세회피는 회계정보의 질 저하와 회계투명성의 저하로 이어지고, 경영자와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기업투명성이 더욱 악화되고 나아가 기업가치의 하락마저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한다.

고윤성 외(2010)은 국내 가족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세회피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족기업은 기타 기업에 비해서 조세회피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서 Chen et al.(2010)은 가족기업의 조세회피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고, 가족기업이 여타 기업에 비해 조세회피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가족기업은 조세회피로 인한 세금절감이나 사적편익 추구행위보다 기업의 명예와 이미지 손상, 기업가치 하락, 조세회피에 대한 처벌 등의 비조세비용이 더 크므로 조세회피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희 외(2006)은 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기업의 자산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세전이익이 증가할수록, 해당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그렇지만 기업의 부채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 수준은 낮아졌다고 한다. 심충진(2009)는 측정방법에 상관없이 조세회피 측정치는 감사보수에 대하여 유의미한 양(+)의 연관성이 있었음

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들은 조세회피 정도와 경영자의 보상 간에 음(-)의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위가 사적편익 추구의 행위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가 늘어날수록 경영자보상은 줄어드는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지배구조가 약한 기업일수록 음(-)의 관계는 더 강화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국내연구로써 박미영(2012)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사인이 교체되면 조세회피 수준이 늘어난다고 한다. 이는 감사보수할인이나 피감기업에 대한 이해부족이 그 원인이라 언급하고 있다. 박미영(2012)에 의하면 감사인이 교체되는 일반적인 경우, 감사인 교체와 조세회피가 유의미한 양(+)의 연관성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감사인 교체의 경우, 감사인이 교체된 기업은 조세회피 행위가 증가하여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낮아지고 초도감사보수 할인 등과 같은 부실감사로 인하여 감리지적이나 쟁송의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세회피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현대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는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질과 회계투명성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현재 조세회피 관련하여 다양한 측정방법이 개발되어 있고 다수의 회계적 조세회피 측정방법을 통하여 기업의 조세회피를 직·간접적으로 측정해볼 수 있음이 알려져있다.

3.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미국에서는 Enron의 회계부정 사건으로 인하여 2002년 Sarbanes-Oxley Act(SOX)가 제정되었고, SOX를 통해 회계법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을 제한하였다. 최종학(2008)은 그의 연구에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실제적인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논란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감사인은 피감기업에 대하여 사실상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합리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독립성이 결여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외관상의 독립성도 또한 유지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최종학, 2008).

비감사서비스에 대하여 연구한 박종일 외(2003)의 결과에 의하면, 동일 감사인이 동일 기업에 대하여 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더라도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하된다는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선우희연 외(2017)에서는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가 조세회피와 감사보수에 대한 관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감사인은 감사 업무와 동시에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높아진 감사위험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여 감사보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면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해되어 이를 높은 감사보수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때 조세회피 정도에 따라 감사보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감사인이 피감기업에 대한 세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큰 가격결정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배성호 외(2016)에 의하면,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감기업에 대한 정보를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피감기업의 조세회피에 조언을 해주는 등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McGuire et al.(2012)에서는 외부감사인이 조세전문가이면서 일반적인 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면, 조세회피 정도는 늘어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4. 연구가설 제시

감사인 강제교체와 자율교체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difference, BT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은(2011)에 의하면, 감사인 강제교체와 BTĐ는 10% 수준에서 음(-)의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감사인 특성과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연구한 박미영(2012)에 의하면, 감사인이 교체되면, 교체된 감사인은 조세회피 정도와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갖는다고 한다. 즉 감사인 교체기업의 경우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박미영(2012)는 감사보수할인이나 피감기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감사인이 교체된 기업의 감사품질은 계속감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기 제시된 선행연구들에 의거,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기업의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가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는 있을 것이라 사료되기 때문이다.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와 조세회피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김은(2011)에 의해서만 감사인 강제교체기업은 BTĐ와 음(-)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감사인이 강제교체되었을 경우 감사품질이 높아졌다면, 조세회피와는 음(-)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경우 감사품질이 연관이 없거나 오히려 나빠졌다면, 조세회피는 관련이 없거나 양(+)의 실증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의 연구가설 1은 다음과 같이 귀무가설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1 : 감사인 강제교체 기업은 조세회피와 관련이 없다.

배성호 외(2016)에 의하면,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감기업에게 유리한 조세회피와 관련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임을 위하여 피감기업과 지속적으로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이는 감사인의

수익과 직결되므로 회계법인은 피감기업의 낮은 법인세 부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실무적으로 피감기업에게 조세회피에 유리한 방향의 회계처리 방법을 제안한다거나, 피감기업의 공격적 조세전략을 묵인하여 궁극적으로는 피감기업의 조세회피에 조력한다는 의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가설에 의거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세회피 정도는 실제 감사투입시간과 양(+)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

비록 본 연구가 감사인 강제교체기업에 투입된 감사시간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감사인이 피감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일정 부분 조력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McGuire et al.(201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부감사인이 조세전문가일 경우에 이들이 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게 되면 해당 피감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증가한다고 한다. 세무전문가인 외부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감기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는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금액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에게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 제공을 통해 조세회피도를 증가시켜 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성은 감사인 강제교체 기업이 의외한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감사인이 교체되면서 동시에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가 제공되었는데 감사품질이 유의적으로 높아진다면, 조세회피는 줄어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연구가설 2는 귀무가설 형태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2 : 감사인의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 제공은 강제교체 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이 없다.

III. 연구설계

1. 조세회피의 측정

Desai and Dharmapala(2006)는 재무자료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방법을 제시하였고, 재무자료로부터 추정한 LTD 중에서 총 발생액으로 설명되는 부분을 이익조정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총 발생액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잔차)을 조세회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LTD는 구성요소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익조정 및 회계기준과 세법의 기계적인 차이의 효과를 제거하고 조세회피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찾기 어렵다고 한다. 그렇기에 조세회피의 측정오차를 완화하고 소유구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조세회피와 소유구조의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강정연 외, 2012 ; Hanlon and Heitzman, 2010).

조세회피 측정을 위한 LTD는 재량적발생액을 측정하는 Jones 모형처럼 LTD 산식에서 비재량 부분을 제외한 잔차를 활용하는 것이다. DD_LTD는 그 값이 커질수록 조세회피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BTD_{i,t} = \beta_1 TA_{i,t} + \epsilon_{i,t}$$

$BTD_{i,t}$: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차이(book-tax difference)를 기초총자산으로 규모조정한 변수

$TA_{i,t}$: (당기순이익-영업현금흐름)/기초총자산

$\epsilon_{i,t}$: 조세회피 측정치($DD-BTD$).

상기 측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균봉 외(2015)에 의거 BTD를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BTD = (\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 - \text{추정과세소득}) / \text{기초총자산}$$

단, 추정과세소득=법인세부담액¹⁾ / 법정최고세율²⁾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선우희연 외(2017)의 연구방법론을 따라서 DD_BTD 상위 5분위에 해당하는 기업-연도에 대해서만을 공격적 조세회피로 간주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모형

감사인 강제교체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조세회피 측정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1)을 설정하였다.

$$\begin{aligned} Tax Avoidance_{i,t} = & \beta_1 + \beta_2 MR_{i,t} + \beta_3 TS_{i,t} + \beta_4 Big4_{i,t} + \beta_5 SIZE_{i,t} + \beta_6 ROA_{i,t} \\ & + \beta_7 LEV_{i,t} + \beta_8 CAP_{i,t} + \beta_9 INTAN_{i,t} + \beta_{10} INVREC_{i,t} \\ & + \beta_{11} FOR_{i,t} + \beta_{12} LOSS_{i,t} + \beta_{13} CR_{i,t} + \beta_{14} GRW_{i,t} \\ & + \sum IND + \sum YD + \epsilon_{i,t} \end{aligned} \quad (1)$$

Tax Avoidance(DD_BTD) : 공격적 조세회피(상위 5분위이면 1, 아니면 0) ;

MR : 감사인 강제교체 여부(감사인 강제교체 기업이면 1, 아니면 0) ;

TS :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 여부(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면 1, 아니면 0) ;

Big4 : 대형 회계법인 여부(대형 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 ;

SIZE :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 ;

ROA :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기말 총자산) ;

LEV : 부채비율(부채총계/기말 총자산) ;

- 1) 법인세부담액=법인세비용+(당기말 이연법인세자산-전기말 이연법인세자산)
-(당기말 이연법인세부채-전기말 이연법인세부채)

- 2) 연도별 법정최고세율 표

연 도	법인세 최고세율	주민세율	법정최고세율
2006~2008년	25%	10%	27.5%
2009~2010년	22%	10%	24.2%

CAP : 유형자산(유형자산/기말 총자산) ;
 INTAN : 무형자산(무형자산/기말 총자산) ;
 INVREC : 기초총자산에서 기초재고자산과 기초매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율 ;
 FOR : 외국인주주지분율 ;
 LOSS : 전기손실발생기업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
 CR : 유동비율(기말유동자산/기말유동부채) ;
 GRW : 총자산성장률 [(기말총자산-기초총자산)/기초총자산] ;
 ΣIND : 산업별 더미변수 ;
 ΣYD : 연도별 더미변수.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가 높은 수준의 조세회피와 관련성이 있다면 연구모형(1)의 β_2 가 유의미한 음(-)의 값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기타 통제변수의 역할 및 부호는 다음과 같이 예상해본다. 기업규모(SIZE)가 클수록 조세회피 기회가 다양하기 때문에 조세회피 활동에 적극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비용가설에 의하면 자산규모가 크면 시장에서 주목하는 수준이 높아서 과세당국으로부터 더 많은 규제를 받는다. 그리고 비조세비용 때문에 조세회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기업규모(SIZE)의 부호는 예상하지 않는다.

수익성(ROA)과 조세회피의 관계는 양(+)의 관련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였다. 부채비율(LEV)이 높은 경우에는 부채의 감소효과로 인한 세무보고이익이 감소하므로 조세회피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즉 부채비율(LEV)이 높을수록 조세회피는 감소한다(고운성 외, 2007). 유형자산비율(CAP), 무형자산비율(INTAN)의 경우 비용화 또는 자산화를 통해 비용의 인식시기를 조절함으로써 과세이연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김은희 외, 2017).

유형자산비율(CAP), 무형자산비율(INTAN)은 양(+)의 관련성을 예상하였다. 특히 유형자산비율(CAP)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많아서 이를 통한 이익조정이 증가할 것이다(박승식 외, 2006). 또한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에 따른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하고자 하는 유인이 줄어들므로 조세회피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음(-)의 관련성을 예상한다(박종국과 홍영은, 2009 ; 강정연과 김영철, 2012). LOSS(전기 손실발생여부), CR(유동비율), GRW(총자산성장률)는 양(+)의 부호를 예상한다(김은, 2011).

IV. 연구 결과

1. 표본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하여 분석에 활용한 기업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변수들은 상·하위 1% 수준에서 원저화(wonsorizing) 하였다.

- (1) 12월 결산 법인 기업
- (2) 금융업을 제외한 기업
- (3) 세전이익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음(-)이 아닌 기업
- (4)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
- (5) 부채비율이 1보다 작은 기업
- (6) KIS-VALUE 또는 Fn-DataGuide에서 재무자료 추출이 가능한 기업

〈표 1〉 표본의 구성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강제교체	29	77	170	30	27	333
자율교체	52	42	60	40	65	259
합계	81	119	230	70	92	592

2. 기술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총 표본은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시기의 592개 기업-연도이다.

전체 표본 중에서 공격적 조세회피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표본은 약 20%이다. 그리고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기업은 표본의 56%이며, 총 표본에서 20%는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받았다. Big4가 감사한 기업은 전체 표본의 59%에 이른다. 총 표본에서 공격적 조세회피를 수행한 표본의 비율과 중위수의 기술통계는 선우희연 외(2017)에서 제시했던 바와 거의 일치한다.

배성호 외(2016)에서는 세전이익과 법인세비용이 음(-)인 기업은 제외하였으며, 김진수 외(2016)에서는 세전이익이 음(-)이 아닌 기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김진수 외(2016)에 의하면, 법인세 납부액이나 법인세 비용이 음(-)이면서 세전이익도 음(-)인 기업은 조세회피 측정치에 신뢰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도 표본을 선정할 때에 선행연구를 따라 세전이익과 법인세비용이 양(+)인 기업만을 선정하였다. 또한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는 금융감

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사업보고서에 비감사용역 관련 항목에서 법인세, 세무조정, 세무서비스 등의 표기가 되어 있는 기업을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 제공 기업 표본으로 하였다.

〈표 2〉 기술통계량 (N=592)

변수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1 분위수	25 분위수	75 분위수	99 분위수
TA	0.199	0	0.399	0	0	0	1
MR	0.562	1	0.496	0	0	1	1
TS	0.201	0	0.401	0	0	0	1
BIG4	0.591	1	0.492	0	0	1	1
SIZE	11.24	11.110	0.625	10.149	10.797	11.557	13.151
ROA	0.061	0.052	0.050	-0.017	0.0243	0.0885	0.249
LEV	0.393	0.386	0.188	0.060	0.242	0.530	0.812
CAP	0.283	0.268	0.172	0.004	0.150	0.395	0.743
INTAN	0.019	0.004	0.044	-0.091	0.0008	0.019	0.240
INVREC	0.285	0.284	0.156	0	0.170	0.393	0.681
FOR	7.552	1.49	11.614	0	0.1	11.05	56.36
LOSS	0.021	0	0.146	0	0	0	1
CR	2.183	1.399	2.485	0.111	0.912	2.467	16.802
GRW	0.219	0.104	0.566	-0.535	0.024	0.244	4.623

* 연구모형 (1)의 변수설명 참조

3. 상관관계 분석

〈표 3〉의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살펴보면 공격적 조세회피와 감사인 강제교체 여부는 1% 수준에서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감사인을 강제교체하게 되면 공격적인 조세회피 수준이 낮아진다는 의미이며, 감사인 강제교체 기업은 덜 조세회피를 하게 된다는 뜻이다. 즉 감사인 강제교체가 제도로써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감사인 강제교체와 BIG4 회계법인도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피어슨 상관관계

	TA	MR	TS	BIG4	SIZE	ROA	LEV	CAP	INTAN	INVREC	FOR	LOSS	CR	GRW
MR	-0.165 ($<.0001$)	1												
TS	-0.028 (0.485)	-0.050 (0.220)	1											
BIG4	0.010 (0.796)	0.118 (0.003)	0.108 (0.008)	1										
SIZE	0.060 (0.143)	0.164 ($<.0001$)	0.038 (0.355)	0.456 ($<.0001$)	1									
ROA	0.123 (0.002)	-0.116 (0.004)	0.008 (0.836)	-0.033 (0.417)	-0.167 ($<.0001$)	1								
LEV	-0.001 (0.965)	0.049 (0.230)	-0.075 (0.066)	0.125 (0.002)	0.312 ($<.0001$)	-0.350 ($<.0001$)	1							
CAP	-0.087 (0.033)	0.103 (0.011)	-0.108 (0.008)	0.068 (0.094)	0.167 ($<.0001$)	-0.224 ($<.0001$)	0.197 ($<.0001$)	1						
INTAN	-0.047 (0.246)	-0.077 (0.060)	0.061 (0.134)	-0.097 (0.018)	-0.128 (0.001)	-0.026 (0.515)	-0.034 (0.396)	-0.170 ($<.0001$)	1					
INVREC	-0.021 (0.608)	-0.018 (0.654)	-0.039 (0.332)	-0.157 (0.0001)	-0.228 ($<.0001$)	0.012 (0.763)	0.117 (0.004)	-0.062 (0.129)	-0.002 (0.952)	1				
FOR	0.014 (0.720)	0.099 (0.015)	0.067 (0.104)	0.254 ($<.0001$)	0.412 ($<.0001$)	0.138 (0.0007)	-0.055 (0.18)	-0.063 (0.123)	-0.062 (0.127)	-0.195 ($<.0001$)	1			
LOSS	0.011 (0.774)	0.015 (0.698)	-0.017 (0.668)	0.030 (0.454)	0.019 (0.644)	-0.217 ($<.0001$)	0.104 (0.010)	0.007 (0.862)	0.023 (0.568)	-0.024 (0.554)	-0.021 (0.607)	1		
CR	-0.011 (0.785)	-0.090 (0.027)	0.036 (0.372)	-0.142 (0.0005)	-0.213 (0.001)	0.227 ($<.0001$)	-0.538 ($<.0001$)	-0.235 ($<.0001$)	0.006 (0.877)	-0.140 (0.0006)	0.006 (0.867)	-0.046 (0.262)	1	
GRW	0.148 (0.0003)	-0.116 (0.004)	-0.036 (0.378)	-0.040 (0.323)	-0.015 (0.703)	0.043 (0.295)	0.055 (0.174)	-0.091 (0.026)	0.206 ($<.0001$)	0.101 (0.013)	-0.044 (0.284)	-0.015 (0.707)	-0.037 (0.364)	1

* 연구모형 (1)의 변수설명 참조.

4. 회귀분석

<표 4>는 감사인 강제교체기업과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모형 (1)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begin{aligned}
 Tax\ Avoidance_{i,t} = & \beta_1 + \beta_2 MR_{i,t} + \beta_3 TS_{i,t} + \beta_4 Big4_{i,t} + \beta_5 SIZE_{i,t} + \beta_6 ROA_{i,t} \\
 & + \beta_7 LEV_{i,t} + \beta_8 CAP_{i,t} + \beta_9 INTAN_{i,t} + \beta_{10} INVREC_{i,t} \\
 & + \beta_{11} FOR_{i,t} + \beta_{12} LOSS_{i,t} + \beta_{13} CR_{i,t} + \beta_{14} GRW_{i,t} \\
 & + \sum IND + \sum YD + \epsilon_{i,t}
 \end{aligned} \quad (1)$$

<표 4> 감사인 강제교체 기업과 조세회피

변수	예상부호	회귀계수	t-value
intercept	(+/-)	0.239	0.65
MR	(-)	-0.065	-1.94*
TS	(-)	-0.032	-0.85
BIG4	(-)	-0.008	-0.24
SIZE	(+/-)	0.027	0.81
ROA	(+)	0.992	2.92**
LEV	(-)	-0.007	-0.07
CAP	(+/-)	-0.124	-1.26
INTAN	(+/-)	-0.747	-2.08**
INVREC	(+/-)	-0.086	-0.77
FOR	(-)	-0.0004	-0.3
LOSS	(+)	0.083	0.79
CR	(+)	-0.012	-1.55
GRW	(+)	0.119	4***
산업더미		포함	
연도더미		포함	
ad. R^2		0.159	
F 값		6.87(<.0001)	

* 연구모형 (1)의 변수설명 참조.

** 다중공선성 최댓값은 1.876임.

<표 4>에서 F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연구모형(1)의 모형설정은 타당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모형의 설명력은 약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Tax Avoidance)와 감사인 강제교체(MR)의 회귀분석 결과는 상관관계 결과에서 예상할 수 있었듯이 통계적으로 음(-)의 유의한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감사인이 강제교체되면 조세회피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강제교체된 감사인은 보다 독립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세무조정(TS)과 조세회피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표 4>에서 알 수는 없었으나 그 방향성이 음(-)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 사료되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도 또한 제시한다.

<표 5>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모형(2)를 활용하여 강제교체 감사인이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대형회계법인이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분석한다.

$$\begin{aligned}
 Tax\ Avoidance_{i,t} = & \beta_1 + \beta_2 MR_{i,t} + \beta_3 TS_{i,t} + \beta_4 Big4_{i,t} + \beta_5 MR_{i,t} \times TS_{i,t} \\
 & + \beta_6 Big4_{i,t} \times TS_{i,t} + \beta_7 SIZE_{i,t} + \beta_8 ROA_{i,t} + \beta_9 LEV_{i,t} \\
 & + \beta_{10} CAP_{i,t} + \beta_{11} INTAN_{i,t} + \beta_{12} INVREC_{i,t} + \beta_{13} FOR_{i,t} \\
 & + \beta_{14} LOSS_{i,t} + \beta_{15} CR_{i,t} + \beta_{16} GRW_{i,t} \\
 & + \sum IND + \sum YD + \epsilon_{i,t}
 \end{aligned} \tag{2}$$

Tax Avoidance(DD_BT D) : 공격적 조세회피(상위 5분위이면 1, 아니면 0) ;

MR : 감사인 강제교체 여부(감사인 강제교체 기업이면 1, 아니면 0) ;

TS :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 여부(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면 1, 아니면 0) ;

Big4 : 대형 회계법인 여부(대형 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 ;

MR*TS : 강제교체된 감사인의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 제공 여부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면 1, 아니면 0) ;

Big4*TS : 대형회계법인의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 제공 여부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면 1, 아니면 0) ;

SIZE :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 ;

ROA :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기말 총자산) ;

LEV : 부채비율(부채총계/기말 총자산) ;

CAP : 유형자산(유형자산/기말 총자산) ;

INTAN : 무형자산(무형자산/기말 총자산) ;

INVREC : 기초총자산에서 기초재고자산과 기초매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율 ;

FOR : 외국인주주지분율 ;

LOSS : 전기손실발생기업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

CR : 유동비율(기말유동자산/기말유동부채) ;

GRW : 총자산성장률 [(기말총자산-기초총자산)/기초총자산] ;

ΣIND : 산업별 더미변수 ;

ΣYD : 연도별 더미변수.

〈표 5〉 감사인 강제교체와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 및 대형회계법인과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의 관계에 대한 분석

변수	예상부호	회귀계수	t-value
intercept	(+/-)	-0.929	-0.68
MR	(-)	-0.256	-1.84*
TS	(-)	-0.055	-0.2
Big4	(-)	-0.150	-1.07
MR*TS	?	0.545	1.91*
Big4*TS	?	-0.563	-1.82*
SIZE	(+/-)	0.338	2.77**
ROA	(+)	4.845	3.87**
LEV	(-)	-0.663	-1.66*
CAP	(+/-)	-0.531	-1.45
INTAN	(+/-)	-3.196	-2.4**
INVREC	(+/-)	0.007	0.02
FOR	(-)	-0.016	-2.85**
LOSS	(+)	0.193	0.5
CR	(+)	-0.023	-0.81
GRW	(+)	0.117	1.07
산업더미		포함	
연도더미		포함	
ad. R^2		0.0888	
F 값		3.72(<.0001)	

* 연구모형 (2)의 변수설명 참조

** 다중공선성 최댓값은 4.06임.

〈표 5〉에서는 앞서 제시한 결과와 동일하게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경우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 제공과 대형회계법인 변수는 그 자체로써 조세회피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도 살펴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감사인이 강제교체되면서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조세회피 수준은 증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정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표 5〉의 이러한 결과는 〈표 4〉를 좀 더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즉, 강제교체와 동시에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받게 되면 조세회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늘어남을 알 수 있

다.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경우에는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받으면 감사업무 시 지득한 기업정보를 토대로 감사인이 피감기업의 조세회피를 돕는다는 것도 또한 유추해볼 수 있다.

McGuire et al.(201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세전문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동시에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피감기업의 조세회피는 증가한다고 한다. 본 연구의 감사인이 조세전문 감사인은 아니지만, 강제교체된 감사인은 강제교체 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새로운 감사업무 수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므로 법률이 정한 감사업무 기간 이후에도 경제적 관계를 위하여 피감기업의 조세회피에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거액의 법인세 납부를 꺼리는 수요가 있는 피감기업에게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공격적 조세회피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해볼 수 있었다.

V. 결 론

우리나라의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는 2006년에 시작되어 2010년에 폐지되었다. 그만큼 시행시기가 짧았기 때문에 제도도입을 통해서 실제적인 영향력이 발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시되는 것이 현실이다.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가 시행되었을 당시에 과연 자본시장에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었는지 또는 동 제도가 제도도입 취지를 살려 실무에 적합하도록 그리고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실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

그렇지만 작금에 이르러 6년 동안의 계속감사기간 이후 감사인을 지정하여 교체한다는 신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미루어 보건대,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감사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입안되었고 실행되었던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는 현실적으로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된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로 인하여 감사인이 변경된 기업의 조세회피 정도를 분석해보려는 것이다. 감사인이 법률에 의거 강제적으로 교체되면 감사인의 독립성이 높아져서 실제적으로 피감기업의 조세회피가 줄어들 것인가? 아니면, 감사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피감기업에 대한 지식을 조세회피에도 활용하게 되어 오히려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할 것인가?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경우의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은 부(-)의 결과를 맺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이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강제교체되면 감사인의 독립성이 높아지고 감사품질도 향상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법률에 의거하여 감사인이 강제교체 된다면,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고 나아가 재무보고의 질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게다가 학술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질문은 상기 제시된 두 번째 질문과 궤를 같이 한다. 감사인이 강제교체제도로 교체된 경우, 교체된 감사인이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한

다면 조세회피는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로 인하여 독립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조세회피 정도는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갖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강제교체된 감사인이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조세회피는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세무전문 감사인이 감사업무와 동시에 세무조정 업무를 하게된다면, 감사업무를 통해서 수집한 피감기업에 대한 정보를 세무업무에도 활용하고, 세무전문 감사인을 고용한 기업들도 그들을 통해서 법인세 부담수준을 줄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표 5>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정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것도 또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대형회계법인이 고품질의 감사업무를 수행한다는 연구결과는 최근 들어 연구를 통해 더욱 실증되는 내용이다. 대형회계법인은 피감기업과 미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지속적인 친소관계를 맺어야 할 유인이 로컬 회계법인(non-Big)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고품질 감사를 수행할 개연성이 높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갖는다. 우선, 감사인이 강제교체되면 조세회피 행위는 감소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실증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에 대한 또 다른 연구인 감사인 강제교체기업과 강제교체된 감사인의 감사품질에 대한 논의에도 다양한 해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대형회계법인의 우수한 감사능력이 입증되었음도 알 수 있었다. 대형회계법인이 감사하면서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형회계법인은 피감기업과의 수집한 정보를 향후에도 경제적인 친소관계를 위하여 피감기업의 조세회피에 조력한다기 보다는 피감기업의 조세회피 정도를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시행예정인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에도 일정 정도 함의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과거에 존재했던 유사한 제도인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를 연구해보는 것은 미래에 입안할 수도 있는 또 다른 제도의 도입에도 가치와 의의를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표본을 정치하게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일종의 어려움이 있었다. 조세회피를 측정하려다보니 세전이익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양(+)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기업 전체 표본을 활용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표본을 통해 감사인이 강제교체될 경우 피감기업의 조세회피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강정연 · 고종권. 2014.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9권 제1호 : 147-183.
- 강정연 · 김영철. 2012.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세무학연구. 제29권 제2호 : 37-67.
- 고윤성 · 김지홍 · 최원욱. 2007.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4권 제4호 : 9-40.
- 고종권 · 윤성수 · 강정연 · 이광숙. 2013. “실증세무연구의 개관”. 회계학연구. 제38권 제2호 : 367-446.
- 김선미 · 유승원. 2010. “감사품질과 감사인 강제교체 및 자율교체”. 회계세무와감사연구. Vol.50 : 227-256.
- 김선미 · 유승원. 2011. “외부감사인 강제교체에 따른 보수주의 성향”. 경영학연구. Vol.40 No.5 : 1211-1246.
- 김은희 · 김임현. 2017. “감사인의 산업전문성과 조세회피”. 회계저널. 제26권 제4호 : 39-76.
- 김진수 · 고종권. 2016.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33권 제3호 : 267-298.
- 김진수 · 김임현. 2016. “조세회피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대형회계법인과 재무분석가의 외부감시효과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33권 제3호 : 111-141.
- 김진희 · 정재욱. 2006.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3권 제4호 : 97-123.
- 노밝은 · 황명철. 2016. “회계이익-세무이익의 차이와 회계이익 및 세무이익의 정보효과”.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2호 : 141-161.
- 노준화. 2009. “감사인 강제교체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Vol.34 No.4 : 1-29.
- 박미영. 2012. “감사인 특성과 조세회피”.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3호 : 191-219.
- 박재환 · 박희우 · 정태범. 2008.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17권 제1호 : 137-160.
- 배성호 · 오광욱. 2016. “외부감사인의 노력과 조세절감 성향간의 관련성”.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4호 : 63-91.
- 선우희연 · 이유진 · 최종학. 2017. “감사인의 세무관련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피감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성향과 감사보수 및 감사품질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6권 제5호 : 33-68.
- 심충진. 2009. “조세회피와 회계감사 보수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회계세무와감사연구. 제50호 : 1-23.
- 이균봉 · 최수비. 2015. “기업지배구조 및 감사품질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28권 제5호 : 2105-2128.

- 정도진 · 김종현 · 장석진. 2017. “선택지정제도 도입 시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6년은 계속감사기간으로 적정 한가?”. 회계저널. 제26권 제6호 : 309-335.
- 최아름 · 선우혜정 · 최종학. 2014. “감사법인 강제교체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 : 현황과악 및 선행연구의 발견에 대한 문헌검토와 정책제언”. 회계저널. Vol.30 No.6 : 37-87.
- Linda Elizabeth DeAngelo, 1981.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3 No.3 : 183-199.
- Mihir A. Desai and Dhammika Dharmapala.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79 No.1 : 145-179.
- Mihir A. Desai and Dhammika Dharmapala. 2009. “Earnings management, corporate tax shelters, and book-tax alignment”. *National tax journal*. Vol.62 No.1 : 169-186.
- Mihir A. Desai and Dhammika Dharmapala. 2009.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91 No.3 : 537-546.
- Scott D. Dyreng, Michelle Hanlon, Edward L. Maydew. 2010 “The effects of executives on corporate tax avoidance”. *The Accounting Review*. Vol.85 No.4 : 1163-1189.
- Sean T. McGuire, Thomas C. Omer, Decheun Wang. 2012. “Tax Avoidance-Does Tax-Specific Industry Expertise Make a Difference?”. *The Accounting Review*. Vol.80 No.3 : 975-1003.

Mandatory Auditor Rotation Firm and Tax Avoidance in accordance with Auditor Provided Tax Services

Im, Uni* · Kim, Jong-I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gree of tax avoidance of auditor forced replacement companies. The conclusions of the previous studies analyzing the forced replacement system of auditors do not all have the same conclusion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more research is needed for the forced replacement system and follow-up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his study starts with the following questions and doubts. If the auditor is forcibly replac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will the auditor assist the tax avoidant in the affected company? Or would the tax evasion behavior be reduced because a certain degree of independence was secured by the auditor mandatory replacement system? In addition, if the auditor is forcibly replaced, will tax avoidance be increased if tax auditing services are provided simultaneously? Or will the degree of avoidance of the taxpayers be lower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when the auditor forcibly replaced the system, the auditor measured the degree of tax avoidance of the compulsorily replaced company. As a result, I could.

On the other hand, if the auditor is forcibly replaced, the auditor who has been forcibly replaced provides the tax avoidance non-audit service simultaneously. These results are similar to those presented by McGuire et al. (2012). McGuire et al. (2012) report that the degree of tax evasion increases when tax auditors provide tax audit serv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or forcible substitution and tax avoidance. As shown in Bae, Seong-Ho and others (2016) Of the taxpayer's tax evasion.

This study is also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eriodical auditor designation system for the listed corporations of the sovereign rights as amended on November 1, 2018.

〈Key words〉 Auditing, Tax Avoidance, Mandatory Auditor Rotation, Auditor Provided Tax Services, Book-Tax Difference(BTD)

* 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uniqu22@catholic.ac.kr, First Author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jayk@catholic.ac.kr, Corresponding Author